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: 정진술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김기덕, 김성준,
김용일, 김원태, 김지향,
김춘곤, 남창진, 박승진,
박영한, 박칠성, 서준오,
이민옥, 이상욱, 이영실,
이종태, 임만균, 전병주,
홍국표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,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, 특히, 각종 쓰레기의 무단 투기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시민참여) ①시장은 폐기 물의 감량·재활용 및 적정처리 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 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 력하여야 <u>한다</u>.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제10조(시민참여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</u>며, 이를 위해 필요한 <u>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</u> <u>있다</u>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